

참고자료 1. 2004 열병합시스템 지원제도

한국가스공사에서는 열병합용 수요 진작으로 계절별 수요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열병합설비(가스터빈 및 가스엔진)를 2004년 1월 이후(가스공급개시일 기준) 신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열병합 설치지원금 및 설계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
□ 지급대상

- 열병합 설치 지원금
'04년 1월 이후 천연가스 열병합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한 자
(단, 건물주와 설치주가 다를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받은 자)
- 열병합 설계 장려금
'04년 1월 이후 천연가스 열병합설비를 설계한 설비설계사무소
- 법에 의한 에너지공급사업자, 산업용 장려금 수령자의 경우 공히 비지급대상 임.

□ 지급금액

구 분	지 급 액
설치 지원금	20,000원/KWe(2천만원 한도)
설계 장려금	10,000원/KWe(1천만원 한도)

□ 신청기간

도시가스 공급개시일 또는 건물준공일 3개월 이내(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 접수일 기준)

□ 신청방법

신청자가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에 직접 신청

□ 세금납부

장려금 지급에 따른 제세금(수수료 포함)은 설치주 및 설계사무소가 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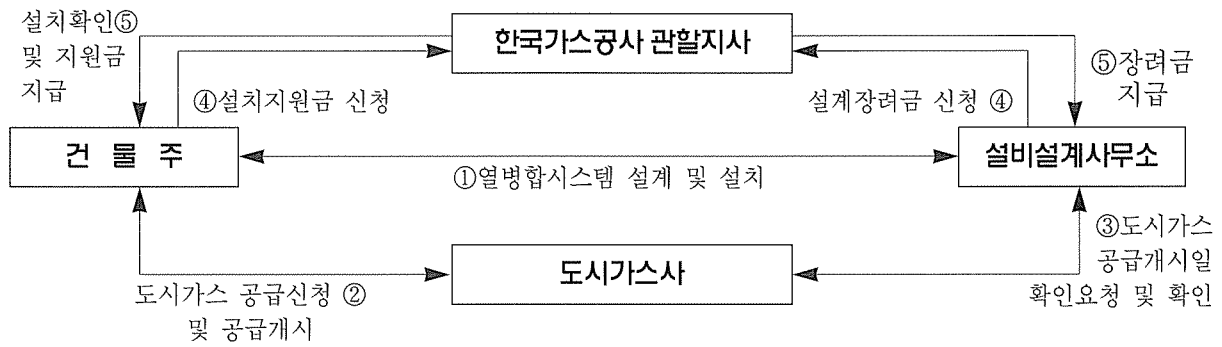
□ 제출서류

별첨 참조

□ 접수처

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 관리부(별첨 참조)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

□ **회계연도 마감일(12. 31)** 기준 20일 이전 접수분에 한하여 이 지급기준에 따라 열병합 설치지원금·설계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
□ **단, 2003년 12월 31일** 이전 열병합 설치·설계한 자는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(가스공급일 기준)

□ 열병합 설치지원금·설계장려금 신청시 제출서류

1. 열병합 설치 지원금 및 설계 장려금 신청서(공사양식)
 2. 사업자등록증 사본(주민등록등본) 1부
 3. 건물등기부 등본 1부
 4.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수령확인서 및 임대차 계약서 1부
(건물주와 설치주가 다를경우)
 5. 장비일람표 및 배관평면도 사본 1부(장려금 신청자에 한함)
 6. 열병합설비 구입확인서(계산서 등)
 7. 열병합설비 설치사진(전경 및 명판)
 8. 법인통장 사본(장려금 수령용)
- * 개인의 경우는 원천징수 후 지급

□ 접수처 및 관할 도시가스

접수처	전화번호	소재지	관할지역	해당 도시가스
서울지사	02-2657-1014	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119	서울, 경기일부	서울, 대한, 극동, 한진, 강남
경인지사	031-400-7204	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원 638	인천, 경기일부	인천, 삼천리
충청지사	042-229-3403	대전 중구 중촌동 203-13	대전, 충남·북	충남, 중부, 청주, 한서
호남지사	062-950-1114	광주 광산구 오선동 273-9	광주, 전남·북	해양, 전북, 익산, 전남, 대화, 군산, 목포
경북지사	053-850-1800	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2	대구, 경북	대구, 구미, 포항, 서라벌, 경북
경남지사	055-330-7700	경남 김해시 안동 540-4	부산, 울산, 경남	부산, 경동, 경남, 신아
강원지사	033-760-6605	강원 원주시 단구동 1682-5	강원, 경기일부	강원, 참빛원주

*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사 관리부에서 접수 및 지급함.